“에너지 소비10위 권한 행사한다”

OECD 회원국 중 26번째로 IEA 가입 … 에너지 국제외교 전기 마련

한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계획에 관한 협정(IEP협정: 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에 대한 국내비준절차가 2002년 2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월5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에 따라 3월18일(현지시각) 벨기에 정부에 협정 가입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협정 71조에 따라 3월28일(가입서 기탁 이후 10일 경과)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IEA 이사회에서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회원국(de-facto member country)'의 지위를 획득해 IEA 이사회 등 공식 · 비공식회의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IEP협정의 국내비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OECD국가 중 26번째로 IEA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국제에너지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석유비축(순수입량 기준 90일분 이상), 비상사태시 석유 수요억제 및 석유할당,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지며, OECD 분담금 비율에 따라 소정의 분담금 납부의무(2002년 IEA 예산의 약 1.8%인 약 4억원)가 발생한다.

IEA는 제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OPEC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IEP 협정(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 IEA 설립근거가 되는 조약)에 따라 설립된 석유 소비국 공동체이며, 현재는 국제 에너지정책 협의기구이다.

IEA 회원국은 최초 회원국 16개국과 추가 회원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초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서독,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며, 추가 회원국은 노르웨이(1975), 그리스(1976), 뉴질랜드(1977), 이태리(1978), 오스트레일리아(1979), 터키 및 포르투갈(1981), 프랑스 및 핀란드(1992), 헝가리(1997), 체코(2001), 한국(2002) 등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외교에서 에너지 수입 세계 10위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의 계기가 마련되고, 선진국들과 함께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체제 형성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며, 비상시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및 선진국의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국제에너지기구의 이사회, 장기협력상설그룹회의, 비상대비상설그룹회의, 석유시장상설그룹회의 등 공식회의에 참가해 에너지부문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국제규범형성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1>